

-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758
------------	-----

2012년 6월 27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4월 18일, 공석호 의원 외 10명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4월 18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(2012년 6월 27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공석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,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『교통안전법』이 개정됨에 따라 『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』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설치시 서울시가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3조제2항제5호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안석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『교통안전법』 개정으로 『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』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기록장치 설치시 서울시가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 의견

- 먼저 동 개정조례안에서 “영상기록시스템 등”을 “영상기록시스템 및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등”으로 개정하는 것은 관계법의 조문변경 사항(법률 제10801호, 2011.6.15)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
-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”의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5호 중 “영상기록시스템 등”을 “영상기록시스템 및 전자식 운행 기록장치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재정지원 대상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택시 호출시스템, 첨단교통정보시스템, 지하철·버스·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, 운임·요금결제시스템, <u>영상기록시스템</u>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·개선사업</p>	<p>제3조(재정지원 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택시 호출시스템, 첨단교통정보시스템, 지하철·버스·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, 운임·요금결제시스템, <u>영상기록시스템 및 전자식 운행기록장치</u>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·개선사업</p>